부가통신사업 등록제 개요 및 등록절차

- □ 부가통신사업 등록 관련 법령
 - o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 3. 재무건전성
 -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계 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5.19>
 -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6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27조(사업의 폐지명령 등)
 -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

 - 사 등록인장계(신사군이도 된 인정시를 포함된다)와 너무 이 모여 이미(교이고의를 포마한다) 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항에 따른 2011.11.14>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바구되었다. 하다 조개적 2011.11.14>

 - © 당충동신위원외는 제1앙에 따른 무가동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 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 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되 사무소이 스케기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7. 궁목소진
 7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8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신설 2011.11.14>
 6 법 제22조제2항에 따로 투스차 오혀의 보기통시사어자의 등록 2 거은 변표 2012와 간다. <시설

 -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11.1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1조(신고사항의 변경), 제32조 (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 o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요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9조제9항 관련 별표2-2)

구 분	등 록 기 준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 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 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정보를 인식하고 그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 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 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
1. 기술적 조치 실시	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계 회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 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 2)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3)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라.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 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마.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가.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
2. 인력 및 물적 시설	나.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 요원을 두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 할 것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것
3. 재무 건 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4. 사업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전략), 매출방안, 향후
계획서 5. 이용자 보호계획서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1)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2) 저작권 위반 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3)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5)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을 제정할 것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 불법복제물 복제자 • 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 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나.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요건 업무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구 분	처리기한	구비 서류
신규 등록	30일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설립예정 법인 포함)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변경 등록	7일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공역무의 종류,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역무 변경 시) 4. 자본금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 양수 상속 · 합병	즉시	1. 양도·양수, 상속·합병 신고서 2. 양도·양수, 상속, 합병 계약서 사본
휴지 · 폐지 법인해산	즉시	1. 휴지, 폐지, 해산 신고서 2.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관련 구비서류

o 등록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8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

방송통신서비스과

o 구비 서류

구비 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링크(별지5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부가통신사업 변경 신고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링크(별지8호)	
별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양 수 신고서	링크(별지9호)	
별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 신고서	링크(별지10호)	

□ 벌칙 조문(징역 또는 벌금형)

벌칙 내용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	o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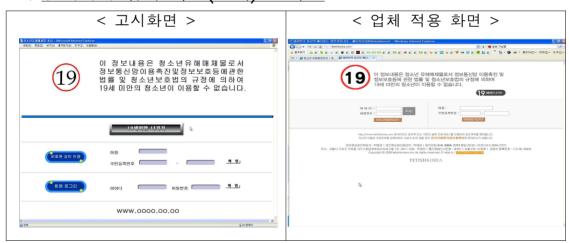
[※] 기타 벌칙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법규는 부가통신사업 항목과 동일함.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요건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9항 관련 별표2-2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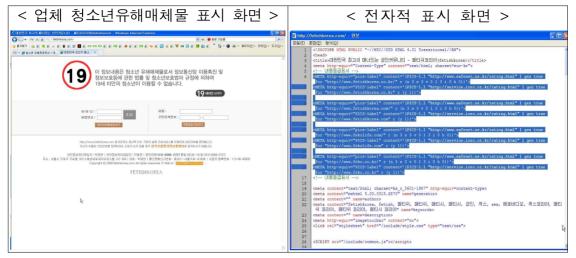
1. 기술적조치 실시계획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 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 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유 해정보를 인식하고 그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 (1)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광고의 표시에 관한 기술적 조치
 - o <mark>증빙자료①</mark>「정보통신망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따른<u>「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제출</u>
 - 증빙자료② :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 실명인증업체와의 실명인증 확인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본을 제출
 - <mark>증빙자료③</mark> : 사업자 홈페이지의 성인 서비스 내용(메뉴 등)에 접근 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화면이 고시 내용에 맞게 표시되었는 지 홈페이지 **캡쳐 화면(컬러)을 제출**



- ※ 1.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
 - 2.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
 - 3.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해로고와 유해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 가.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
 - 나.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
 - 다. 약관에 의한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절차 기능
 - 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

- <mark>증빙자료④</mark> : 사업자 홈페이지의 성인서비스에 접근시 청소년유해매 체물의 전자적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 캡쳐화면(컬러)을 제출**



※ 전자적 표시 여부 확인은 밑줄부분(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URL) 확인 ◆NETA http-equiv="PICS-latel" content='(PICS-1.1 "www.safenet.ne.kr/rating.html" | gen true for "http://fetis/korea.com/" r (y 1))'>

- (2) 청소년 유해정보 인식 및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 o 증빙자료 5와 6 : 청소년 유해정보 인식 및 유통방지를 위한 「기 술적조치 실시계획서」 및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구 축 계약서 사본 제출
 - 해당 계약서 내 시스템 작동 및 필터링 기능(97%이상)이 포함
 - ※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 청소년 유해정보를 키워드, 해쉬값, 특징기반 으로 음란물 등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약 97%이상 차단시 유효)
- (3)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 o 증빙자료⑦: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u>네트워크</u> 보안, 정보통신설비보안 등 정보보호 지침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아래 표의 내용이 포함된「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제출

2.		2.1.1. 트래픽 모니터링	▶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백본망, 주요노드 및 외부망과 연계되는 주요회선의 트래픽 소통량을 24시간 모니터링
술 적	2.1. 네트워크	2.1.2. 무선서비스 보안	▶ 무선랜서비스,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자인증, 데 이터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
보호	보안	2.1.3.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 외부망과 연계되는 구간에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 워크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
조	2.2.	2.2.1.	▶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는 단독서버로 운영하고 DMZ에

		웹서버 보안	설치
		2.2.2. DNS서버 보안	▶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 설정파일 백업 실시
		2.2.3. DHCP서버 보안	▶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설정파일 백업 실시▶ IP 할당 상황 등에 대한 로그기록 유지·관리
		2.2.4. DB서버 보안	▶ 내부망에 설치▶ 외부망에서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정보통신 설비 보안 2.2. 정보통신 설비 보안	2.2.5. 라우터/스위치 보안	▶ ACL 등의 접근제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
치		2.2.6.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 이상징후 탐지를 알리는 경고 기능을 설정하여 운영▶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비정상 트래픽 차단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를 주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
		2.2.7. 취약점 점검	▶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
		2.2.8.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 인가된 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일회용 패스워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가 절차를 강화 ▶ 불필요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 제거 등 보안설정
		2.2.9.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설정. 단, 설정 가능한 자리수가 8자리 미만일 때는 설정 가능한 최대의 자리수로 설정 ▶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2.2.10. 로그 관리	▶ 최소 1개월 이상 로그기록 유지·관리(정보보호시스템은 3개월)
		2.2.11. 보안패치 관리	▶ 보안패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입수하고 적용▶ 주요 보안패치에 대해서는 적용일 등 패치정보를 기록·관리
		2.2.12. 백업 및 복구	▶ 주요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 ▶ 백업 담당자, 백업 및 복구 방법·절차·주기 등을 기록·관리

- 나.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 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4) 악성프로그램 판별

- o 증빙자료 ⑧ :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사항이 포함된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제출
- o 백신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여 검사, 주기적인 갱신, 점검 여부
- 증빙자료⑨ : <u>백신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센스</u> <u>구매 영수증 사본</u> 및 동 소프트웨어를 현행으로 <u>업데이트하고 있는지와</u>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PC **화면 캡처 사본 제출**

- 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 2)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3)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 (5)「저작권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한 기술적 조치
 - o 증빙자료⑩: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시기반 필터링, 특징기반 필터 링, 기타 침해자 대상 경고 문구 발송에 대한 기술적 조치 내용이 포함된「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제출
 - ※ 침해자 대상 경고 문구는 다음의 내용과 같음
 - ㆍ본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배포가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o 증빙자료(I) :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확인서(특징기반필터링)」 및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이용계약서」를 각각 제출
 - o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
 - 증빙자료(D)의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내용에 인증 받은 기술을 적용할 때 인증기술 수준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 용되게 하고 있는지 확인
 - ※ 기술적 조치 온·오프 스위치, 응답지연 및 오류로 미회신시 미차단 설정 등을 하지 않을 것
 - o 해당 기술을 모든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
 - 증빙자료⑩의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에 업로드/다운로드 시도 시 미인식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의 모든 단계. 즉, 기반 필터링→ 특징기반 필터링 단계까지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지 여부 확인
 - 증빙자료⑩의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에 SW/HW 구성도(기술적조 <u>치가 포함된 HW와 미포함된 H</u>W로 구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라.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 (6)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 o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내용에 전송자를 식별·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 전송자 식별 확인 정보는 변경 가능하지 않는 회원 ID나 전송자의 이메일 주소등 회원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말하며, 회원 ID와 연계된 닉네임은 변경 가능하여 전송자 식별 확인정보로 볼 수 없음
- 마.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 (7)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의 내용에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정보 의 목록,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보관하도록 하 는 아래의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o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u>서버 로그파일 정보를 보관</u>하는 계획

< 로그파일로 저장해야 할 기록의 종류 >

구 분	종 류
복제·전송 내역 정보	복제·전송 고유 번호, 게시물 번호, 제목, 업로더 아이디(ID)·아이피(IP), 다운로더 아이디(ID)·아이피(IP), 다운로드 대가(판매가격), 업로더 대가(지급액), 제휴 구분(제휴/비제휴), 결제방법(정액제. 캐시 등), 제휴사 지급액(제휴 콘텐츠일 경우), 다운로드 일시(거래일시)
게시물 내역 정보	게시물 고유 번호, 게시물 번호, 제목, 업로더 아이디(ID)·아이피(IP), 다운로드 대가(판매가격), 제휴 구분(제휴/비제휴), 업로드 일시, 다운로드 수(누적)

o <u>해당 기록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계획</u> 포함 여부 **확인**

2. 인력 및 물적 시설

- 가.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
- 나.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을 두고 하 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
 - o 저작권·청소년·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표
- 증빙자료 ① : 저작권·청소년·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하고 공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품의문서 및 홈페이지 캡처화면 등
 - ※ 지정된 책임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연락처(전화번호)를 공표
 - · 인터넷 홈페이지(첫화면 최하단 중앙)
 - 점포, 사무소에 공고 및 비치, 간행물, 소식지 등에 지속 게재
 - o 모니터링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 확보
 - 증빙자료 🗓 :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 명부 1부
 - ※ 근로기준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시간 2인 이상(3교대 기준 최소 6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 ※ 명부에 각 요원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이메일, 연락 처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 ※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 확보
 - o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구비 여부 확인
 -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내용 확인으로 갈음

3. 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 o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 증빙자료 4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영업용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잔고증명서 등)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하여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지 확인

4. 사업 계획서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전략),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o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5. 이용자보호 계획서

- 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 1)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2) 저작권 위반 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3)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5)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을 제정할 것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받아 명시

- - 이용자 골고용대될 서디얼자 및 저디기산 병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불법복제물 복제자·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 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 나.__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 o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8항에 따른 이용자보호 계획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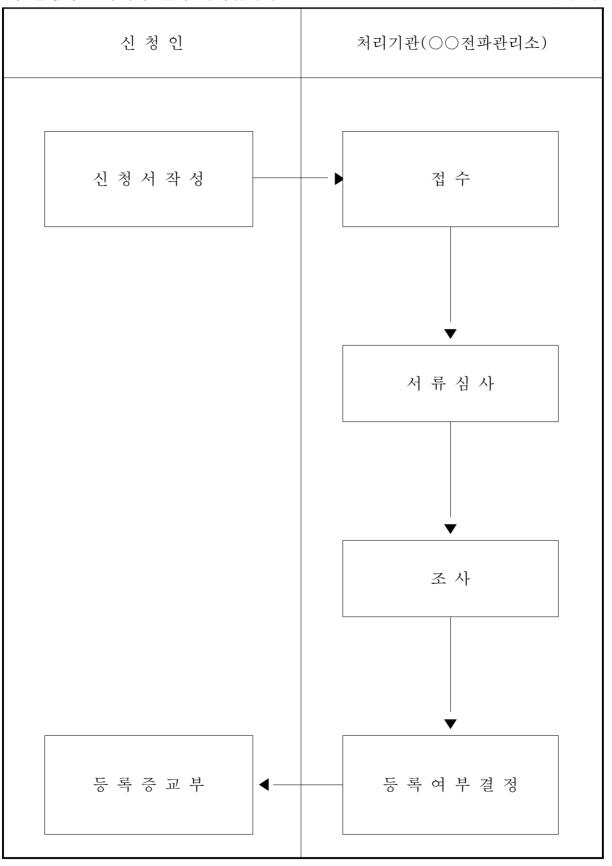
※ 이용자보호 계획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이용자 보호계획 내용	비	고
o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 설치 - 직원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o 저작권 위반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 저작권 위반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등이 포함되었는가? - 침해를 받은 권리자의 보상 절차 및 이행계획이 포함되었는가?		
o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고접수 및 처리계획 -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대처계획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모니터링 시 청소년 유해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자체 삭제처리토록 계획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유해여부 판단을 위해 방심위에 신고토록 하는 절차 계획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전송될 수 있는 조치(보안서버 설치 등)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O 서비스 약관 제정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이 명시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이 명시 -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제재규정 -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 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시 준비할 서류 목록

서류 목록	비 고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신청서(별지5호 서식)	
□ 법인등기부 등본	공무원이「행정정보망」으로 법인등기부 조회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
□ 정관	법인(설립예정 포함)에 한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증빙자료①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광고의 표시에 관한「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 증빙자료② 실명인증확인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본 □ 증빙자료③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홈페이지 캡처 화면 □ 증빙자료④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 표시 캡처 화면 □ 증빙자료⑤ 청소년 유해정보 인식 및 유통방지를 위한「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 증빙자료⑥ 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시스템 구축계약서 사본 □ 증빙자료⑥ 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시스템 구축계약서 사본 □ 증빙자료⑥ 정보보호를 위한「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 증빙자료⑥ 작성프로그램 판별을 위한「기술적조치실시계획서」 □ 증빙자료⑨ 백신SW설치 및 업데이트, 검사 여부 □ 증빙자료⑩ 저작권법 관련「기술적조치실시계획서」 □ 증빙자료⑪ 저작권법 관련「기술적조치실시계획서」 □ 증빙자료⑪ 저작권법 관련「기술적조치실시계획서」 □ 증빙자료⑪ 저작권법 관련「기술적조치실시계획서」 □ 증빙자료⑪ 저작권법 관련「기술적조치실시계획사」 □ 증빙자료⑪ 저작권 관련「기술적조치실시계획사」 □ 증빙자료⑪ 저작권・청소년・정보보호 책임자지정및 공표여부 □ 증빙자료⑪ 저작권・청소년 전 보호 책임자지정및 공표여부 □ 증빙자료⑪ 모니터링및 이용자보호 전담요원 명부 □ 증빙자료⑪ 모니터링및 이용자보호 전담요원 명부 □ 증빙자료⑪ 모니터링 및 이용자보호 전담요원 명부 □ 증빙자료⑪ 모니터링 및 이용자보호 전담요원 명부 □ 증빙자료⑪ 모니터링 및 이용자보호 전담요원 명부 □ 증빙자료⑪ 업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자료 ※ 단, 증빙자료 ①, ⑤, ⑦, ⑧, ⑩의「기술적조치실시계획서」는 하나의계획서에모든 항목이포함되어있으면 1건으로통합 작성하여제출가능. 이 경우목차에 각각의항목이목립적으로표기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 이용자보호 계획서	

	특수한 유형의		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FA 주민]화 및 (전화 X 번호 (FAX (외국인) 록번호	-)
Ę.	주 소(주된 사무소) 자 본 금 특 수 한 유 형 의 - 가 통 신 역 무 의 종 류 및 내 용			
사 '	사업구역 업용 주요설비의 요 및 설치장소			
깉		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력·통신사업 등록을 신청합니 신청인	다. 년 원	
	신청인(대3	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부동의하는 7 해당서류 제를	경우 수수료
구 비 서 류	설립예정법인을 포함 2. 법 제22조제2항제1호나	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확합니다)의 정관 1부 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수 있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 (1부)	아 전 전
정보		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부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신청인(대표자)	공무원 확인사	



		및 특수		신청(부가 형의 부가 청)서]사업	부가	통신사입	한 유형의
		상호 또는 '				화/FAX 번 호	(전호 (FA)	}) X)	
신청	(신고)인	성 명(대표	자)			_ (외국인 <u>)</u> 등록번호			[)
		주 소 (주된 사무	소)	T				Ι	
Ì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변경(여	정)일자
]사업법」 저 청(변경신고)		같은 법 시	행령	제31조저]2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신경	성(신고		<u> </u>	월 (서명	일 또는 인)
0	○전파관	반리소장 귀	하						
	변 경	병 구 분	민원역	인(대표자) 저	출서-		(부동	구원 확약 의하는 ▷ 서류 제	경우
구	상호·명칭] 또는 주소		_		0 /	불우에 현 사업자등	한합니다	본(개인의
비 서	대	표 자		-		O }	 입등기	부 등본	-
류		₽(서비스)의 종류	- , -	역무(서비스 및 내용을 기	, -	- ''		_	
		가동신사업자인	o 자본 [:] 있는	금의 변경을 서류	확인할	수 0 분	 입등기	부 등본	-
정부	법」제21:	조제1항에 때	ት른 행정	경신고서)의 역 성정보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담딩		수수료
이 유	위의 담당	풍무원 확인	, , ,	확인하는 것 인(대표자)	에 농		,	E는 인)	없음

별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도・양수신고서	즉 시		
	상호 또는 명칭				
양도자	성 명(대표자)	주민(외국인)			
ゔエハ	78 명(明五年)	등록번호			
	주 소	(전화:			
	상호 또는 명칭				
아스카	थ म/नोचन)	주민(외국인)			
양수자	성 명(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			
야	도・양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별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통신 사업의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의 정관 1부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5. 이용자 보호(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등에 관한 사항 포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6. 보증보험증서 사본 1부 7.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증(사본 1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의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정관(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이용자 보호계획서 1부 6.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등본(1부)	없						
	부가 통신 사업의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 는 경우에만 해당) 1부 3.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1부)	없음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정	(부)	가 및 특수				早フ	가)통	신사임]		리기간
			양 호 또는 명		신고/	<u>^1</u>						즉 시
피	합병 법인		성명(대표지					주민	(외국인)			
또는 소멸 법인		주소	\f \f \				등.	록번호	(기취·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상호 또는 명	병칭						(전화:			
		성명(대표지					주민	(외국인)				
		주 소	17				능.	록번호	<u> </u> (전화: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상호 또는 명	병칭						(건와)			
		성명(대표지						(외국인)				
		주 소	1 /				등	록번호	 (전화:			
 합병사유			, 4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별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와 같이			
뛸 	성(무가	빚 `	특수한 유영의	의 부	·가)동신	.사업의	압	명을	신고압니 년	나. 월		일
							신	고인	_	_	경 드	E는 인)
\vdash	○전파	·관리	소장 귀하						rlrl코므	റി ടിപ്പി	2] 중L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						담당공무(부동의	하는 경] 우	수수료
		1 중) L							해당서	류 제출	출)	
	통신 사업의 경우	2. 별 2	병계약서 사본 1투 지 제2호서식의 별	별정통	신사업 사	·업계획서	1부		1.합병당사	자(존속·	신설	없음
		4. 사약	법용 주요설비의 내	(설립예정법인 포함)의 정관 1부 법인)의 법인 ³ 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본(1부)								
		5. 이용자 보호(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등에 관한 사항 포 2.기					2.기술인력의	국가기술 부)	자격			
구 비		구 : 6 변환	의 설치현황 및 (증보험증서 사본	운영계 1부	[획서 각]	부	,	·		. ,		
		7. 등	록증 또는 신고필	증 1년	1							
	특수한	1. 합년	병계약서 사본 1투	<u>.</u>	ا (ماما	೧೩ ಕನ	ы	וו וב ב				없음
류	유형의	정기	관(등록하려는 자 법인을 포함한합니	니다)의	의 정관 1 ^년	₽						
	신 사업의 경우	3. 법 추9	제22조제2항제13 었음을 증명할 수	호무터 있는	│ 제3호까 · 서류 각	지의 능물 1부	투요건	선을 갖	양수인의]부	
			업계획서 1부 용자 보호계획서	1부					등 -	분(1부)		
			록증 또는 신고필증									
	부가	1. 합 ¹ 9 토	병계약서 사본 1투 시마구서도(새리오	<u>.</u> 유혀	이 보가토	시서비스크	己 人	コシニ				없음
	통신 사업의	경: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양수인의]부	ЖП	
	경우		우에만 해당) 1부 록증 또는 신고필		<u></u>				능된 	분(1부)		
			고서의 처리의									
	모의 공 것에 등		용을 통하여 }니다.	甘ら	5 중 두 ₹	크이 커	러	日は	ㅎ 구천 역	ギ인 수 9	び言	확인하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